

1. 개정이유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 요건 중 분야별 실무경력 인정기관 기준 완화하고
실습협약기관을 다양화하여 전문간호사 교육 및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야별 실무경력 인정기관 확대(별표1 개정)

- 1) 정신·감염관리·사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및 실무경력 인정기관 확대
- 2) 감염관리, 응급분야에서의 군병원 경력을 일부(75%)만 인정하는 경력인정기
간 특례를 삭제하여 근무지에 따른 차등없이 해당 분야에서 요구하는 실
무경력을 모두 인정함

나. 실습협약기관 확대(별표2 개정)

- 1) 분야별 실습협약기관을 ‘기본’과 ‘추가’로 구분하고, ‘300병상 이상의 중
합병원’은 ‘기본’, 분야별 특성에 따라 ‘추가’ 기관을 제시하여 교육기회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실무경력인정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정신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승급경력 인정기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별표 1 제1호마목 실무경력인정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별표 1 제1호바목 실무경력인정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사업장 의무실·건강관리실·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 또는 부속의료기관
-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또는 안전보건교육기관(산업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건강연구소, 근로자건강센터, 직업병안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산업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 제1호사목의 실무경력인정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급·구조대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병원

별표 1 제1호아목 실무경력인정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관리수행기관

별표 1 제1호자목 실무경력인정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중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병원(중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 제1호차목 실무경력인정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호스피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지역보건법」에 따라 호스피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호스피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 제1호카목 실무경력인정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의료기관(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 제1호타목의 실무경력인정기관란 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별표 1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제5조제1항 관련)

자격구분	교수요원		실습 협약 기관	
	전공전임 교수	실습지도 겸직교수	필수	추가
보건 전문간호사	학생 10명당 1명 이상	학생 5명당 1명 이상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중 2개소 이상	
마취 전문간호사	학생 10명당 1명 이상	학생 5명당 1명 이상	마취과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정신 전문간호사	학생 10명당 1명 이상	학생 5명당 1명 이상	「의료법」에 따 른 300명상 이 상 종합병원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국 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등 2.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규정 등에 관 한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 전문요원 승급경력 인정기관 3.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 관리사업 수행기관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가정 전문간호사	학생 10명당 1명 이상	학생 5명당 1명 이상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는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학생 10명당 1명 이상	학생 5명당 1명 이상	「의료법」에 따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산업 전문간호사	학생 10명당 1명 이상	학생 5명당 1명 이상	의사 또는 간호사가 전담보건의료관리자로 지정된 사업장	1. 직업환경의학과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기관 2. 근로자건강센터, 직업병안심센터 3. 대한산업보건협회 4. 「의료법」에 따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응급 전문간호사	학생 10명당 1명 이상	학생 5명당 1명 이상	응급의학과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노인 전문간호사	학생 10명당 1명 이상	학생 5명당 1명 이상	「의료법」에 따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 「의료법」제3조의5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3.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4. 노인건강증진사업 실시 기관
중환자 전문간호사	학생 10명당 1명 이상	학생 5명당 1명 이상	「의료법」에 따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학생 10명당 1명 이상	학생 5명당 1명 이상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	1. 「의료법」에 따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 「지역보건법」에 따라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보건소와 지역사회형 호스피스 제공하는 기관
중양 전문간호사	학생 10명당 1명 이상	학생 5명당 1명 이상	「의료법」에 따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임상 전문간호사	학생 10명당 1명 이상	학생 5명당 1명 이상	「의료법」에 따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아동 전문간호사	학생 10명당 1명 이상	학생 5명당 1명 이상	「의료법」에 따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시설 2. 「의료법」에 따른 병·의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실습교육 과정부터 적용한다.